

한국의 보조기기법 제정 의의와 후속과제에 대한 연구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The study of meanings and follow-up tasks for enactment of 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Se-hyun Nam
Dept. of Rehabilitation, Han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후속 과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의 근거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가적 의무 이행,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 규정 등의 긍정적 의의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와 추가적인 법령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보조기기법, 보조공학, 보조공학사, 장애인, 노인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s and follow-up tasks for enactment of Act on Supply and Utilization Promo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eniors(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I conducted analysis about contents and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Act. The study found meaningful effects ; it provided the basis for supporting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based on the social model, it led to an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obligations such a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provided terms related to assistive technology. It is suggested to conduct follow-up studies and to put the efforts to strengthen additional laws for backing up the effective policy for extended support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for security of budget, for establishing regional service centers, for phasing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controlling quality, for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ystem, and for promoting industries.

Key Words : Assistive Technology Act, Assistive Technology, Assistive Technology Professional, Disabled, Seniors

1. 서론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 제정되었다.

2015년 12월 한국에서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 본 논문은 2016년 한신대학교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1 September 2016, Revised 2 October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Published 28 Octo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Sehyun Nam(Hanshin University)
Email: namsh@hs.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점과 보조기기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 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1,2,3,4,5,6,7].

아울러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가 상현실이나 정보통신기와 휴먼서비스의 융복합적 시도가 장애인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5,8].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제정된 보조기기법은 장애인 보조기기의 활용 확산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관련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후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8년 동안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있어왔는데, 본 연구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논의되었던 주제들, 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시행될 법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법률이 시행되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후속 과제들과 실행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보조기기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2. 보조기기법의 제정 과정과 쟁점분석

2.1 보조기기법 제정 과정의 고찰

보조기기법과 관련된 입법시도는 2007년에 최초로 시작되었다. 제17대 국회의 안명옥 의원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는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안인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안인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정하균 의원 대표발의안인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역시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한바 있다. 이후 2012년 시작된 19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최종 법안 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명칭과 내용이 유사한 법률안이 6건이나 발의되는 역사를 거치게 되었다[7].

2.2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2.2.1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쟁점 고찰

[9]의 연구는 보조기기 관련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넓은 차원에서는 ‘별도의 법안, 소비자·수요자·서비스 중심의 법안,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 생활 불편인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 측면에서는 ‘정확한 용어 정의와 개념구분, 서비스 전달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항의 포함’이 필요하다고 주요 쟁점들을 제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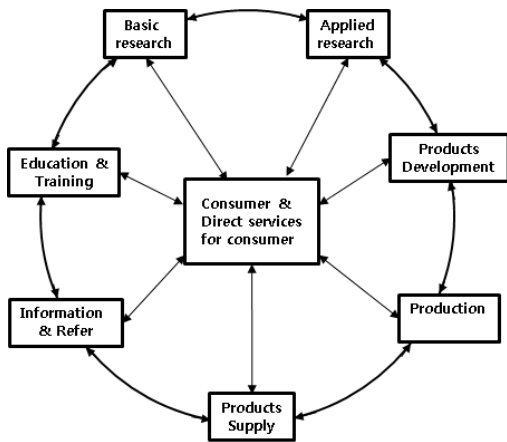
17대와 18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률안을 토대로 쟁점사항을 분석했던 [10]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지원확대와 산업 발전의 균형 고려, 복지부 중심의 법제도 운영대안 모색’이라는 두 가지 대원칙하에 ‘산업육성과 장애인 지원의 조화, 관련 부처 간 조정과 통합기능을 위한 종합조정기구 설치, 공격적 지원 방식 결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수립,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 표준화 및 품질관리 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후 법률제정 1년 전인 2015년에 수행된 [11]의 연구에서도 보조공학의 정의와 지원 범위, 보조공학 제공을 위한 서비스 및 정보체계, 전문인력 체계 정비,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법안의 주요 쟁점 요소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률 및 정책개발을 위해 수행되었던 [7]의 연구에서는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장애인 지원 확대에 대한 우선 순위 적용, 부처간 사업에 대한 순차적 협력 체계 구축, 국가적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전문인력 관련제도의 순차적 도입,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대한 순차적 적용’이라는 쟁점에 입각한 입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2.2.2 입법 쟁점의 시사점 분석

고찰된 선행연구의 입법 쟁점들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예산 마련’,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관련 용어 및 개념의 명확한 정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품질관리’ 등의 쟁점이 2회 이상 제시되고 있고, 그 외 ‘독립된 별도의 법률 입법’, ‘정부 종합조정 기구 설치’,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연구개발)과 장애인지원의 균형’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Fig. 1] Models of Service delivery in rehabilitation technology[12]

[12]는 보조기구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기초연구, 응용연구, 생산품 개발, 제조, 보급, 정보제공 및 의뢰, 교육 및 훈련, 소비자 및 직접서비스'의 8가지 보조기기산업 구성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보조기기법률안 제정을 위해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핵심쟁점들은 해당 구성요소들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조기기 직접 서비스 제공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절히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국내외 관련법과 쟁점 비교

2.3.1 국내 관련법과 쟁점의 비교

[7]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국내에 시행 중인 법률 중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11개 법률을 <Table 1>과 같이 보조기기 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요 법률로 분석한 바 있다.

관련 법률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법률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서 장애인보조기구 용어 규정과 보조기기 교부 등 지원, 하위 영역인 의지보조기 관련 전문인력을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과 산업 지원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외의 법률들도 각 개별 법률에 따른 대상자에게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앞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보조기기 관련 법률이 담아야 할 쟁점 사항 중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예산 마련',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품질관리', '정부 종합조정 기구 설치',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연구개발)과 장애인지원의 균형' 등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고, 보조기기에 대한 독립적인 개별법도 부재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Important Laws and Contents related Assistive Technology in Korea

Law	Contents about Assistive Technology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erm of Assistive products for disabled, Assistive products supply for disabled, ... etc.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ssistive products supply for disable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ssistive products supply for worker's compensation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Reasonable accommodation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Welfare products supply for seniors
Senior-friendly industry promotion Act	Senior-friendly products
Support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rights guaranteed	Assistive products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Assistive products supply for workshop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ICT assistive products supply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ssistive products supply for veterans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etc.	Assistive products supply for educational

2.3.2 해외 주요국가 관련 법·제도와의 비교

해외 주요 국가 중 보조기기와 관련된 개별법률을 제정하여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88년 기술적 지원을 위한 법률(The Technology related assistance Act)을 제정했다가 시한이 만료된 후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으로 다시 제정했다. 해당 법에서는 주정부 단위에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록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보조공학에 대한 개념정의와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보조금의 지급, 정보체계의 구축 등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재활법,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15가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교육, 복지, 직업, 재활 분야 전반에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별도법을 제정한 또 다른 국가인 일본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복지연구의 개발, 보급,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지원법이나 개호보험법과 같은 6개 내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용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별도의 보조기기 관련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차별금지법, 의료보장관련법 등에서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의 차이는 각국의 복지정책의 기반 특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형 연구에서는 별도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을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와 민간과 공공의 혼합전달체계 특성을 가진 국가로 분류한 반면, 별도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은 시민주의나 조합주의적 특성에 의한 복지국가의 성격에 공적급여와 국가중심의 전달체계가 강력하게 구축된 국가로 분류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7,10,13]. 따라서 시장중심 자유주의적 특성이 강한 미국이나 일본의 복지정책 모델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조기기법은 별도의 법률을 수립하되, 기존의 민간자원과 신규로 구축하는 국가 중심의 공공전달체계를 혼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7]. 보조기기 관련 별도법률인 미국의 보조기기법과 일본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을 우리나라 보조기기법과 대비해 보면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 지원, 장애인에 대한 평가, 보조기기 지원, 훈련, 정보제공 등 각종 서비스 지원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보조기기법에서는 관계부처 간 조정, 도시와 지방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IT 등 신기술 적용을 위한 투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하여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 보조기기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3.1 우리나라 보조기기법의 주요 내용

2015년 12월에 제정된 법률은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제3장 보조기기센터,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의 다섯 개 영역과 제6장 보칙으로 되어 있다[14]. 법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에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률의 명칭과 목적에서 적용 대상 범위를 장애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 노인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전체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운용과 기술 개발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조 정의에서도 장애인, 노인 등의 용어 규정과 함께 보조기기의 정의, 보조기기 서비스의 정의를 포함하여 법적 용어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이 단순히 기기에 대한 지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제2조 기본이념이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통해서 보조기기의 활용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권리를 실현시킬 주체로서 책임성을 가지며,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제5조)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의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한다’와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거나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하위법령의 제정 수준에 따라 체감되는 법의 실효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기기사서비스의 제공은 법 제13조, 제14조에서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와 운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등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쉽게 보조기기를 빌려서 사용하거나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받고, 혹은 가지고 있는 보조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이나 수리를 지원 받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센터설치에 대한 책임 주체와 재원의 배분, 설치의 강제성 등이 모호하게 명시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 외에 보조기기 정보제공과 품질관리, 이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와 업체 관리에 대한 사항이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관리에 대한 조항이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마지막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조항들이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명시되어 있다.

3.2 법제정의 의의와 주요 쟁점 대응 분석

3.2.1 보조기기법 제정의 의의

보조기기법의 제정은 2006년 제정된 UN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일반의무와 제9조 접근성, 제20조 개인의 이동,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성, 제26조 훈련과 재활,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 일상의 다양한 범주에서 보조기기의 활용이 정당한 권리이고, 협약국가가 지원의 의무[15]를 지도록 규정한 것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를 가진다. 아울러 입법취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시행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14]. 아울러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다양한 유관 법률들이 보조기기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종합적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 정책이 보조기기 활용의 책임을 개인의 몫으로 규정하던 것과 달리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환경의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도가 중요한 것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조기기 활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장애의 원인과 해결의 책임을 개인에게 귀결시키던 개별적 모델에 입각한 기존 보조기기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의 부재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모델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

3.2.2 주요 쟁점 대응 여부 분석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음에도 제정된 보조기기법은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쟁점사항들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족이 부족한 첫 번째 쟁점은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예산 마련'과 관련한 사항이다. 제정된 법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와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와 같이 실현의 강제성이 취약한 임의 조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제8조 제3항에서는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주무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하위 법령의 완성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수준이 개선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폭 넓은 보조기기 지원 제도와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와 제14조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 조항이 제정되었지만, 제14조에서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를 자율성에 맡기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센터의 설치지역 범위나 규모, 역할, 예산 등이 유동적이고 관할 지역의 지자체장이 예산을 공동 부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지역별 서비스 수준의 편차 발생이나 책임 회피 등의 문제 소지를 남겼다.

'관련 용어 및 개념의 명확한 정의' 쟁점은 제3조 정의에서 그 동안 각 유관법에서 다양하게 명명되던 assistive technology devices의 개념을 '보조기기'로 정의하고, 적용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을 포괄하는 한편, 보조기기 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이전 법률에 비해 훨씬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대해서도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 보조공학사 등의 전문가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쟁점은 [7]의 연구에서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 우려와 다영역 전문가 집단 간 조율 필요성 등의 우려사항이 제기되어 시행 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법정 자격 제도가 당위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들이 다영역 서비스 전문가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품질관리'와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연구개발)' 등의 쟁점도 법 제9조부터 제12조, 제21조와 제22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의 상당수가 기존에 사문화되어 있던 장애인복지법의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으로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체계적인 제도화 노력이 요구된다.

4. 결론 및 제언

4.1 주요 결과 요약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보조기기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법률 제정의 의의와 후속 과제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의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보조기기법 제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고,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에 혼재되어 사용되던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국내외의 유관 법률의 검토와 선행 연구, 법률 작업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이 효과적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추가적

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보조기기법 등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계부처 간 정책의 조정이나 도시-지방 간 격차 해소, IT 신기술의 적극적 적용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후속과제와 제언

장애인과 가족들이 법의 제정 목적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한 지원제도에 대한 하위법령을 보다 강력한 내용으로 제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정책 수요자 집단인 장애계의 적극적인 요구와 국회, 재정부처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보조기기 지원 제도가 당장 확대되지 못할 경우 제13조와 제14조에 의한 센터를 적정 수준의 규모로 설치하여 보조기기와 관련된 직접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활용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보조기기센터의 경우 법에 의한 수행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센터는 설립주체의 책임과 수행 역할에 부합하는 규모를 전제하고 있지 않아 자칫하면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 센터를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 인구 규모와 지자체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광역기능과 지역기능, 지역 프로그램 등의 수준으로 다양한 모형을 적용하여 서비스 범위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 자격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융복합서비스 성격의 보조기기사서비스가 다학문 영역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공유되는 국가자격제도로 설치 운영되도록 전문가의 개념과 역할 규정, 양성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의 수행과 사회적 협의 도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의 시행과 함께 배출되는 전문인력의 수요가 함께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 기관 성격의 센터와 민간 서비스 관련 기관, 산업계 등에 전문인력의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여 법률의 보완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품질관리와 연구개발 등은 장애인 대상의 지원 확대와 호흡을 맞춰 소비자들이 보다 양질의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선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5년 제정되어 시행을 3개월여 앞 둔 시점에서 보조기기법이 한국사회에 가져올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제한점, 그리고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 과제 제안을 제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연구의 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기기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향후 전문인력 양성 및 운용 방안과 품질관리,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수행되어야 할 후속과제로 제언하는 바이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Hanshin University Research Fund.

REFERENCES

- [1] Reed, B. J., Fried, J. H., and Rhoades, B. J.. "Empowerment and assistive technology: the local resource team model." *Journal of Rehabilitation*, 61, pp.30-35. 1995.
- [2] Galvin, J. C., and Scherer, M. J.. "Evaluation, selection, and using appropriate assistive technology. *Proed Inc*", 1996.
- [3] Edyburn, D., Higgins, K., and Boone, R.. "Handbook of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practice, Knowledge by design, Inc.", 2004.
- [4] S. D. Kang, J. H. Yook & Nam, S. H.. "A Method of Activating about Consumer Centered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Korean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2005.
- [5] Mi-Jung. Kim. "Research Trends in Rehabilitation Program for Disabled Applyi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2. pp. 381-391. 2015.
- [6] Sehyun Nam. "Role of the Center for Assistive Technology in regional local government."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7, pp.149-162. 2012.
- [7] S. H. Nam, J. Y. Kong, M. J. Kim, I. H. Kang & An, N. Y.. "A Study on the Improvement Polices of Assistive Technologies Devices for Seniors and Disabilities,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Hanshin University", 2015.
- [8] Y. M. Song and Jung, B. S.. "Convergence Development of Video and E-learning System for Education Disabl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4. pp. 113-119. 2015.
- [9] Kil Sung Oh. "Necessity and Direction of Assistive Technology Related Legisl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47. No.1. pp. 47-66. 2008.
- [10] KODDL, "Infra Establishing for Assistive Technology in Korea - about Policies and Legislation.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2010.
- [11] J. H. Yook, "An Analysis of Issues on Legislating Assistive Technology Act in Korea." *Journal of Rehabilitation Welfare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 Vol 9. No.4. pp.251-256. 2015.
- [12] Smith. RO. "Models of service delivery in rehabilitation technology. In *Rehabilitation technology service delivery: a practical guide. RESNA.*", 1987.
- [13] S. P. Hong. & Cha, Y. J.. "A Study of Occupational therapists' Role o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Services of Assistive Technology in Foreign Countries." *The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Vol. 1. No.1, pp.1-9. 2009.
- [14]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t on Supply and Utilization Promotion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eniors", 2016.
- [15]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8.

남 세 현(Nam, Se hyun)



- 1998년 2월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문학사)
- 2012년 8월 : 한신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조공학, 직업재활, 장애인 정책, 사회서비스

· E-Mail : namsh@hs.ac.kr